

[별표 6]

통 계 표 목 록

=====

(1) 민사사건 통계표

구 분	종 류	표 명 칭	보 고 관 서
번 호 \	월 보		
보고례민 제 1 호	월 보	상고심민사사건표	대 법 원
“ 제 2 호	“	민사재항고신청사건표	“
“ 제 3 호	“	항소심민사사건표	고 등 법 원 · 지 방 법 원
“ 제 4 호	“	민사항고신청사건표	“
“ 제 5 호	“	제1심민사사건표	지 방 법 원
“ 제 6 호	“	민사신청사건표	“
“ 제 7 호	“	민사독촉사건표	“
“ 제 8 호	“	민사집행사건표	“
“ 제 9 호	기 보	국가배상사건표	대법원 · 고등법원 · 지방법원
“ 제 10 호	“	민사사건기제기간별건수표	“
“ 제 11 호	“	상고심, 항소심민사사건종류별건수표	대법원 · 고등법원 · 지방법원
“ 제 12 호	“	제1심민사사건종류별건수표	지 방 법 원
“ 제 13 호	연 보	민사소송금액및가액별건수표	대법원 · 고등법원 · 지방법원
“ 제 14 호	“	상고심민사사건결과표	대 법 원
“ 제 15 호	“	항소심민사사건결과표	고 등 법 원 · 지 방 법 원
“ 제 16 호	“	민사소송관계인원표	대법원 · 고등법원 · 지방법원
“ 제 17 호	“	민사가압류, 가처분사건종류별건수표	고 등 법 원 · 지 방 법 원

(2) 행정선거사건 통계표

보고례행 제 1 호	월 보	선거소송사건표	대 법 원
“ 제 2 호	“	상고심행정소송사건표	“
“ 제 3 호	“	행정(재)항고, 신청사건표	대 법 원 · 고 등 법 원
“ 제 4 호	“	제1심행정소송사건표	고 등 법 원
“ 제 5 호	기 보	상고심행정소송사건종류별건수표	대 법 원
“ 제 6 호	“	제1심행정소송사건종류별건수표	고 등 법 원
“ 제 7 호	“	행정소송기제기간별건수표	대 법 원 · 고 등 법 원
“ 제 8 호	연 보	상고심행정소송사건결과표	대 법 원
“ 제 9 호	“	선거소송관계인원표	“
“ 제 10 호	“	행정소송관계인원표	대 법 원 · 고 등 법 원

(3) 가사사건 통계표

보고례가 제 1 호	월 보	상고심가사사건표	대 법 원
“ 제 2 호	“	항소심가사사건표	고 등 법 원
“ 제 3 호	“	가사(재)항고신청사건표	대법원 · 고등법원 · 지방법원
“ 제 4 호	“	제1심가사사건표	지 방 법 원
“ 제 5 호	“	가사갑류신청사건표	“
“ 제 6 호	“	가사조정사건표	“
“ 제 7 호	기 보	가사사건기제기간별건수표	대법원 · 고등법원 · 지방법원
“ 제 8 호	“	상고심, 항소심가사심판사건 종류별건수표	대 법 원 · 고 등 법 원

"	제 9 호	"	제1심가사심판사건종류별건수표	지 방 법 원
"	제 10 호	연 보	임치사건표	"
"	제 11 호	"	가사사건금액및가액별건수표	대법원 · 고등법원 · 지방법원
"	제 12 호	"	상고심가사심판사건결과표	대 법 원
"	제 13 호	"	항소심가사심판사건결과표	고 등 법 원
"	제 14 호	"	이혼사건원인별표(1)(2)	지 방 법 원
"	제 15 호	"	가사심판사건관계인원표	대법원 · 고등법원 · 지방법원
(4) 형사사건 통계표				
보고례형	제 1 호	월 보	상고심형사사건인원수표	대 법 원
"	제 2 호	"	항소심형사사건인원수표	고 등 법 원 · 지 방 법 원
"	제 3 호	"	제1심형사사건인원수표	지 방 법 원
"	제 4 호	"	형사신청사건표	대법원 · 고등법원 · 지방법원
"	제 5 호	"	즉결사건인원수표	지 방 법 원
"	제 6 호	"	영장발부인원 및 기소인원수표	대법원 · 고등법원 · 지방법원
"	제 7 호	"	형사항고, 재 항고사건표	"
"	제 8 호	기 보	벌과금액표	"
"	제 9 호	"	상고심형사사건죄명별재판인원수표	대 법 원
"	제 10 호	"	항소심형사사건죄명별재판인원수표	고 등 법 원 · 지 방 법 원
"	제 11 호	"	제1심형사사건죄명별재판인원수표	지 방 법 원
"	제 12 호	"	약식명령사건죄명별처리인원수표	"
"	제 13 호	"	즉결사건죄명별인원수표	"
"	제 14 호	"	국선변호인선정사건표	대법원 · 고등법원 · 지방법원
"	제 15 호	"	재정신청사건죄명별인원수표	고 등 법 원
"	제 16 호	"	형사사건기제기간별인원수표	대법원 · 고등법원 · 지방법원
"	제 17 호	연 보	상고심, 항소심형사사건결과인원수표	대 법 원 · 고 등 법 원
"	제 18 호	"	형사보상청구죄명별건수표	대법원 · 고등법원 · 지방법원
"	제 19 호	"	형사20세미만자중요죄명별재판인원표	"
"	제 20 호	"	형사소송관계인원표	"
(5) 소년사건 통계표				
보고례소	제 1 호	월 보	소년보호사건인원수표	지 방 법 원
"	제 2 호	"	소년보호 동행영장 발부 인원수표	"
"	제 3 호	"	소년보호 가위탁 결정 인원수표	"
"	제 4 호	기 보	소년보호사건 중요 죄명별처분 인원수표 (1) (2)	"
"	제 5 호	"	위탁소년 처분 인원수표	"
"	제 6 호	연 보	보호소년 중요 죄명별 행위원인표	"
"	제 7 호	"	보호소년 중요 죄명별 직업표	"
"	제 8 호	"	보호소년 연령 및 교육정도표	"
"	제 9 호	"	보호소년 환경표	"
(6) 등기사건				
보고례등	제 1 호	월 보	등기사건표	지 방 법 원
"	제 2 호	기 보	부동산 및 선박등기종류별건수표	"
"	제 3 호	연 보	상업등기 사건표	"
"	제 4 호	"	비영리법인 등기 사건표	"

“	제 5 호	“	부부재산 약정등기 사건표	“
“	제 6 호		공증인법 제8조에 의한 공증 사건표	“
(7) 기타사건				
보고례기	제 1 호	월 보	호적 비송 사건표	지 방 법 원
“	제 2 호	기 보	등록세 및 수입인지 수입액표	대법원 · 고등법원 · 지방법원
“	제 3 호	“	공탁사건표	지 방 법 원
“	제 4 호	“	집달리 사무처리 사건표	“
“	제 5 호	“	법관1인당부담건수표	대법원 · 고등법원 · 지방법원
“	제 6 호	연 보	호적사건 건수표	지 방 법 원
“	제 7 호	“	차지차가 조정사건표	서울 · 인천 · 대전 · 대구 · 부 산 · 마산 · 전주 · 광주 · 목포

통 계 카 아 드

수 리		[제 1 호]				종 결						
접수담당자		과 장		상고심 민 사 사 건 (카 아 드)		참여서기 과 장						
				항소심 항소심								
수 리 상 황				변 론 및 재 판 상 황				기 타 상 황				
사 건	※ 제 호		단독			변 론 회 수	1 회	6 회				
	※ 19						2 회	7 회				
	※ 사건		합의				3 회	8회 이상				
항소액		인지액					4 회	10회 이상				
※		※ 원					5 회	20회 이상				
당 사 자	원 고	자 연 인				증 거 조 사	증 인		※ 인			
		법 인					감 정 인		※ 인			
		권리능력 없는 법인					본 인		※ 인			
	피 고	자 연 인					검증 실시 회수		※ 회			
		법 인				※ 종결일자 19 . . .						
		권리능력 없는 법인				각 하 명 령						
	참 가 인	자 연 인				판 결	기	변 론 경 유				
		법 인						각	변 론 불 경 유			
		권리능력 없는 법인							파	자 판		
원고보조 참가				환 송								
피고보조 참가					이 송							
상고 원고		상고 피고				상고 쌍방						
항소		항소		항소		항소						
원 심				※ 법원				기 제 기 간				
원 심	원 승				종 결 내 용	소 취 하						
	원 고 일 부 승					취하 항소(상고)취하 간주						
	원 패					화 해						
	기 타					인 락						
				기 타								
								비고				

주 : 해당란에는 ○표를 하고 ※란에는 내용을 기재할 것

접수담당자		과 장		상고심 민 사 사 건 (카 아 드)										참여서기		과 장									
				항소심																					
수 리 상 황										변 론 및 재 판 상 황										기 타 상 황					
사 건	※ 제 호						단독				변 론 회 수	1 회		6 회				소변경 ※ 원							
	※ 19 . . .						합의					2 회		7 회											
	※ 사건											3 회		8회 이상				항소일자 19 . . .							
청구금액 ※ 또는 가액						인지 ※ 원				4 회		10회 이상													
당 사 자	원 고	자 연 인								증 거 조 사	증 인		※ 인		대 리 인										
		법 인									감 정 인		※ 인												
		권리능력 없는 법인									본 인		※ 인												
	피 고	자 연 인									검증 실시 회사		※ 회												
		법 인									※ 종결일자 19 . . .														
		권리능력 없는 법인																							
	참 가 인																								
원고보조 참가				피고보조 참가										기 제 기 간											
수 리 구 분	본 소																								
	반 소																								
	참 가 소 송																								
	파 기 환 송																								
	이 송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종 결 내 용	각 하 명 령						비 고								
											판 결	원 승													
												원 고 일 부 승													
												원 패													
												각 하													
										취 하	소 취 하								기 제 기 간						
											취 하 간 주														
											화 해														
											인 락														
											이 송														
기 타								판결금액 · 가액 ※ 원 가집행금액 ※ 원																	

주 : 해당란에는 ○표를 하고 ※란에는 내용을 기재할 것.

수 리		(제 3 호)										종 결													
접수담당자		과 장		상 고 심 행 정 소 송 사 건 (카 아 드)										참여서기		과 장									
수 리 상 황										심 리 상 황										종 결 상 황					
사 건	※ 제 호								변 론 회 수	1 회				종 결 내 용	※종결일자 19 . . .										
	※ 수리일자 19 . . .									2 회					판 결	기		변 론 경 유							
	사건									3 회						각		변 론 불 경 유							
당 사 자	원 고	자 연 인								7 회				파 기	자 판										
		국가기관 또는 법인									환 송														
		권리능력 없는 법인									이 송														
	피고 행정 청	※									각 하														
수	원 고 상 고								8 회 이 상				각 하 명 령												

리 구 분	피 고 상 고				10 회 이 상					취 하		
	기 타				20 회 이 상					취 하 간 주		
※ 원심법원명			법원	소 송 관 계 인 및 증 거 조 사 상 황	소송 대리인	원 고	인	기 재 기 간	상 고 취 하			
원 심	원 고 승				증 인	피 고	인		기 타			
	원 고 일 부 승						※ 인		1월 이내		2월 이내	
	원 고 패				감 정 인	※ 인	3월 이내			4월 이내		
	기 타					※ 인	5월 이내			6월 이내		
인지 액	※ 원				본 인	※ 인	9월 이내			1년 이내		
					검증 실시 회수	※ 회	2년 이내			2년 초과		
							비고					

주：해당란에는 ○표하고 ※표시란에는 내용을 기재할 것.

수리														수리			
접수담당자		과장		(제 4 호)										참여서기		과장	
				제 1 심 행정소송사건 (카아드)													
수리상황				심리상황				종결상황									
사건	※ 제 호			변론회수	1 회						※종결일자 19 . . .						
	※ 수리일자 19 . . .				2 회						판결	원 고 승					
	※ 사건				3 회							원 고 일 부 승					
당사자	원고	자연인			4 회				종결내용	원 패							
		국가기관			5 회					각 하							
		또는 법인			6 회												
	권리능력 없는 법인		7 회				각 하 명령										
	피고 행정청		※		8 회 이상					소 취 하							
수리구분	본소				10 회 이상				취 하 간 주								
	반소				20 회 이상				이 송								
	참가소송				소송대원고		※인		기 타								
	파기환송				리인피고		※인		1월 이내 2월 이내								
	이송				증인		※인		3월 이내 4월 이내								
인지액	※ 원			감정인		※인		5월 이내					6월 이내				
				본인		※인		9월 이내				1년 이내					
				검증 실시 회수		※회		2년 이내				2년 초과					
				상고		※ 상고일자 19 . . .			원 고					피 고			
비고																	

주：해당란에는 ○표하고 ※표란에는 내용을 기재할 것.

수리		[제 5 호]										수리																																																													
접수담당자		과장		상소심심가사심판사건(카아드)										참여서기		과장																																																									
수리상황								증거조사 및 종결상황								기타																																																									
사건	※ 제 호							소송대리인	청구인			※ 인			교육정도	학력	청구인	피청구인	이혼사유	부정행위																																																					
	※ 19 . . .								피청구인			※ 인								악의의유기																																																					
	※ 사건								증인			※ 인								존속학대																																																					
항고액(상고액)		※ 원		인지액		※ 원		증거조사상황	감정인			※ 인			교육정도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혼청구시 까지 동거기간	당사자학대																																																			
당사자	\		청구인		피청구인		참가인		본인			※ 인										교육정도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기타	3년이상 생사불명																																														
	\		남여		남여		남여		검증 실시 회수			※ 회															기타																																														
	\		인		구인		인		종결일자 19 . . .						연령	20세미만	30세 "	40세 "	50세 "	60세 "	60세 이상						비고	1년 미만																																													
	\		남여		남여		남여		각하명령																			연령	20세미만	30세 "	40세 "	50세 "	60세 "	60세 이상	비고	2년 "																																					
	한국인								종결내용	판결	기각	변론경유																								연령	30세 "	40세 "	50세 "	60세 "	60세 이상	비고	3년 "																														
	미국인											판결	파기	변론불경유																															연령	40세 "	50세 "	60세 "	60세 이상	비고	5년 "																						
	일본인													판결																													파기	자판									연령	50세 "	60세 "	60세 이상	비고	10년 "															
중국인								판결							파기	환송				연령	60세 "	60세 이상	비고	10년 이상																																																	
기타									판결	파기	이송					연령	60세 "	60세 이상	비고																																																						
수리구분	청구인 항소(상고)										종결내용	각하								연령	농어업	노무자	종업원	상업	공업	군인	회사원	교육가	공무원	자유업	무직	기타																																									
	피청구인항소(상고)								소취하						연령	노동자	종업원	상업	공업														군인	회사원	교육가	공무원	자유업	무직	기타																																		
	기타								상고 (항소) 취하																															연령	노동자	종업원	상업	공업	군인	회사원	교육가	공무원	자유업	무직	기타																						
※ 원심법원명 법원								판결내용	원			가집행선고액 원			직업	농어업	노동자	종업원	상업	공업	군인	회사원	교육가	공무원	자유업	무직	기타																																														
원심	청구인 승											기																1월이내			2월이내						직업	농어업	노동자	종업원	상업	공업	군인	회사원	교육가	공무원	자유업	무직	기타																								
	청구인 일부 승											재																3 "			4 "																			직업	농어업	노동자	종업원	상업	공업	군인	회사원	교육가	공무원	자유업	무직	기타											
	청구인 패										기			5 "			6 "						직업	농어업	노동자	종업원	상업	공업	군인	회사원	교육가	공무원	자유업	무직	기타																																						
심판회수	1 회				2 회				상	간			2년 "			2년초과						직업														농어업	노동자	종업원	상업	공업	군인	회사원	교육가	공무원	자유업	무직	기타																										
	3 회				4 회					상고일자 19 . . .									직업	농어업	노동자		종업원	상업	공업	군인	회사원	교육가	공무원	자유업	무직	기타																																									
	5 회				6 회					청구인																							직업	농어업	노동자													종업원	상업	공업	군인	회사원	교육가	공무원	자유업	무직	기타																
	7 회				8 회					피청구인																																																직업	농어업	노동자	종업원	상업	공업	군인	회사원	교육가	공무원	자유업	무직	기타			
	10 회				20 회					상																																																													직업	농어업	노동자
이상				이상				피청구인									직업	농어업	노동자	종업원	상업	공업	군인	회사원	교육가	공무원	자유업	무직	기타																																												

주 : 해당란에는 ○표하고 ※란에는 내용을 기재할 것

수리		(제 6 호)										종결																			
접수담당자		과장		제 1 심 가사사건(카아드)										참여서기		과장															
수리 및 심판상황								증거조사 및 종결상황								기타															
사건	※ 제 호							소송대리인	청구인			※ 인			교육정도	학력	청구인	피청구인	이혼사유	부정행위											
	※ 수리일자 19 . . .								피청구인			※ 인								악의의유기											
	※ 건명 사건								증인			※ 인								존속학대											
청구금액또는 가액		※ 원		인지액		※ 원		증거조사	감정인			※ 인			교육정도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혼청구	당사자학대									
당사자	\		청구인		피청구인		참가인		본인			※ 인										연령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20세미만	이혼청구	3년이상 생사불명			
	\		남여		남여		남여		검증 실시 회수			※ 회																연령	20세미만	이혼청구	기타
	\		남여		남여		남여		종결일자 ※197 . . .						연령	20세미만	이혼청구	1년 미만													
종심청구인승														연령				20세미만	이혼청구	2년 미만											

\									결 내 용	판			령				시 까 지 의 동 거 기 간		
		한국인										청구인 일부승			3 세 미 만				
		미국인										청 구 인 패			5 년 미 만				
		일본인										각 하			10 년 미 만				
		중국인										각 하 명 령			10 년 이 상				
		기 타																	
수 리 구 분	심 판 청 구								취 하			60 세 미 만			비 고				
	심 판 이 행									이 송			60 세 이 상						
	참 가 소 송										화 해			농 어 업					
	파 기 환 송											기 타				노 무 자			
	이 송												판결내용			가집행선고금액		종 업 원	
직권 조정 회부	회부일자		※ 19					※ 원	※ 원			상 업							
	반환일자		※ 19								공 업								
심 판 회 수 수	1 회		2 회				기 제 기 간	1 월 이 내			군 인								
	3 회		4 회					2 월 이 내			회 사 원								
	5 회		6 회					3 월 이 내			교 육 자								
	7 회		8 회					4 월 이 내			공 무 원								
	10 회		20 회					5 월 이 내			자 유 업								
	이 상		이 상					6 월 이 내			무 직								
								9 월 이 내			기 타								
								1 년 이 내											
								2 년 이 내											
								2 년 초 과											
							항 소	※항소일자 197											
청 구 인																			
피 청 구 인																			

주： 해당란에는 ○표하고 ※표시란에는 내용을 기재할 것

수리
접수담당자

과장

(제 7 호)
항 소 심
형 사 사 건 (카아드)
상 고 심

수리상항				심리상항			
사건	제 호			소송 관계인 및 증거 조사 상황	사 설 변 호 인		※ 인
	19				국 선 변 호 인	단기 3년이상	
	※ 사건					미 성 년 자	
성 명			70 세 이 상				
성 별	남		농 아 자				
	여		심 신 장 애 자				
피고인	연 령					빈곤기타사유	
					기 타		
		16세 미 만			특 별 대 리 인		※ 인
		18세 미 만			보 조 인		※ 인
		20세 미 만		증 인		※ 인	
		30세 "		감 정 인		※ 인	
		40세 "		검 증 실 시 회 수		※ 회	
		60세 "		1 회			
원심법원※	법원			변론 회수	2 회		
	원심	형 의	사 형			3 회	
			무 기			4 회	
						5 회	

형 명	선 고	징역		구 속 해 제	6 회 이 상		
		금 고			10 회 이 상		
		집행유예			보 석	신 청	
		벌금				직 권	
	선 고 유 예					※ 금	원
	무 죄				구 속 집행 정 지		
	형 의 면 제 면 소				구 속 취 소		
	기 타				기 타		
구 속 관 계	구 속						
	불 구 속						

										종 결		
										참여서기	과 장	
재 판 상 황					기 타 상 황							
※ 종국일자 19 . . .					상 고	※ 일자 19 . . .						
※ 처분죄명						전 과	검 사					
처 분 내 용	파 기 ^ 취 소 v	자 판	사 형				피 고 인					
			징역 또는 금고	무 기		1 회						
				유 기	정 기	10년 이상		2 회				
			5년 "			3 회						
			3년 "			4 회						
			1년 "			5 회 이 상						
			1년 미만									
			집행유예									
			부 정 기									
			벌 금		농 어 업							
			선 고 유 예		노 무 자							
			무 죄		종 업 원							
			형 의 면 제 면 소		상 업							
			환 송		공 업							
			이 송		회 사 원							
					공 무 원							
					자 유 업 (연예인)							
					무 직							
					기 타							

주 : 1. 해당란에는 ○표하고 ※란에는 내용을 기재할 것.
2. 벌과금과 추징금은 그 액수를 비교란에 기입할 것.

수리		(제 8 호) 제 1 심 형 사 사 건 (카아드)			
접수담당자	과 장				
수리상황		심리상황			
사 건	※ 제 호	소송 관계인 및	사 설 변 호 인		
	※ 19 . . .		국 선 변	단기 3년이상	
	※ 사건			미 성 년 자	
피 고	성 명 ※			70 세 이 상	

인	성 별	남		증거 조사 상황	호 인	농 아 자		
		여				심 신 장 애 자		
		법인				빈곤기타사유		
	연 령	16세 미만			특 별 대 리 인		※ 인	
		18세 "			보 조 인		※ 인	
		20세 "			증 인		※ 인	
		30세 "			감 정 인		※ 인	
		40세 "			검 증 실 시 회 수		※ 회	
		60세 "			1 회			
		70세 "			2 회			
70세 이상		3 회						
수 리 구 분	검 사 기 소			변 론 회 수	4 회			
	파 기 환 송				5 회			
	이 송				6 회 이 상			
	정 식 재 판 청 구				10 회 이 상			
	준 기 소							
	기 타							
구 속 관 계	합 의	구 속		구 속 해 제	보 석	신 청		
		불 구 속				직 권		
	단 독	구 속			※ (금 원)			
		불 구 속			구 속 집 행 정 지			
					구 속 취 소			
					기 타			

										종 결	
										참여서기	과 장
재 판 상 황					기 타 상 황						
종국일자	※ 19 . . .				항 소	※ 19 . . .					
처분죄명	※					검 사					
처 분 내 용	판 결	사 형				전 과	피 고 인				
		징역 금 고	무 기	유 기	정 기		10년 이상		1 회		
							5년 "		2 회		
							3년 "		3 회		
							1년 "		4 회		
						1년 미만		5 회 이 상			
						집행유예		농 어 업			
						집행유예		노 무 자			
		부 정 기				직 업	종 업 원				
		자 격 정 지					상 업				
		벌 금					공 업				
		선 고 유 예					회 사 원				
		무 죄					공 무 원				
		형 의 면 제 면 소					자 유 업(연예인 의사등)				
	공 소 기 각				무 직						
	관 할 위 반				기 타						
	소 년 부 송 처				교 육 정 도	무 학					
	이 송					국 민 학 교					
	기 타					중 학 교					
1월 이내			2월 이내	고 등 학 교							
3월 "			4월 "	대 학 교 이 상							
기 제 기 간	5월 "			6월 "	기 타						
	9월 "			1년 "							
	2년 "			2년 초과							
					비 고						

주 : 1. 해당란에는 ○표하고 ※표시란에는 내용을 기재할 것.
2. 벌과금과 추징금은 그 액수를 비교란에 기입할 것.

수리		(제 9 호) 약식명령사건 (카아드)		종결		
접수담당자	과장			참여서기	과장	
처리상황				기타상황		
사건	※ 제 호			전과	1 회	
	※ 수리일자 19 . .				2 회	
	※ 사건				3 회	
피고인	성명	※			4 회	
	성별	남			5 회 이상	
		여		농 어 업		
		법인		노 무 자		
	연령	16세 미만		종 업 원		
		18세 미만		상 업		
		20세 미만		공 업		
		30세 미만		회 사 원		
		40세 미만		공 무 원		
		60세 미만		자유업(연예인 의 사등)		
		70세 미만		무 직		
		70세 이상		기 타		
처분내용	처분일자 19 .		교육정도	무 학		
	벌 금			국 민 학 교		
	과 료			중 학 교		
	추 징 금			고 등 학 교		
	기 타			대 학 교		
정식재판	직권회부		비고			
	검 사					
	피 고 인					

주 : 해당란에는 ○표하고 ※표시란에는 내용을 기재할 것.

수리		(제 10 호) 소년보호사건 (카아드)			
접수담당자	과장				
수리상황				종결상황	
사건	※ 제 호			보호처분	1. 보호자 또는 적당한 자의 감호에 위탁
	※ 19 . .				2. 사원, 교회, 기타 소년 보호단체에 위탁
	※ 사건				3. 병원 기타 요양원에 위탁
소년	성명				4. 감화원에 송치
	성별	남			5. 소년원에 송치
		여			6. 보호관찰
	연령	14세 미만		불 처 분	
		16세 "		심 리 불 개 시	
		18세 "		타 소 년 부 에 이 송	
		20세 "		검 찰 청 송 치	
	수리구분	법 관 송 치		기 타	
검 사 송 치					
경찰국장 또는 서장의 송치					
제24조3항에 의한 통고					

		종결	
		참여서기	과장
기타상황			

출생 별행 위원 인별	혼인중출생		가 정 에 있 는 자	실 부 모		직 업 별	학 생		교 육 정 도		불취학	
	혼인외출생			양 부 모			농 업			국	재 학	
	미 상			계 부 모			노 동			민	중 퇴	
	유 흥			실부양계모			사 환			학	졸 업	
	유 혹			실모양계모			점 원			교		
	빈 곤			실 부			직 공			중	재 학	
	분 노			실 모			자동차조수			학	중 퇴	
	허 영			양 계 부			이발사조수			교	졸 업	
	모 방			양 계 모			행 상			고	재 학	
	교우불량			형 매			노 점 상			등	중 퇴	
	방 임		가 정 외 에 있 는 자	기 타			구두담기			학	졸 업	
	일시작용			친 척			신문행상			대	재 학	
	정신결함			타 인			폐물수집			학	중 퇴	
	신체결함			하 숙			인 객 원			교	졸 업	
	가정결함			기 숙 사			창 녀			공	재 학	
										민	중 퇴	
	기 타			자 활			식 모			학	졸 업	
				주거부정			무 직		비 고	고	재 학	
				기 타			기 타			등	중 퇴	
										공		
										민	졸 업	
										학		
										교		
										기	재 학	
										타	중 퇴	
											졸 업	

주 : 1. 해당란에는 ○표하고 ※표란에는 내용을 기재할 것.
2. 벌과금과 추징금은 그 액수를 비교란에 기입할 것.응

(1)민 사

보고례민제1호(월보)										법원
상 고 심 민 사 사 건 표										
197 . . .										
처 리 \ 구 분		단 독	합 의	계	누 계	비 고				
수 리	전 달 미 제									
	이 달 수 리									
	계									
기 제	각 하 명 령									
	판 결	기	변론 경유							
		각	변론 불경유							
		파	자 판							
		기	환 송							
		이	송							
		각	하							
	계									

	결	취소이	자판			
			환송			
			이송			
		각하				
	계					
	소취하					
	항소취하					
	화해					
	인락					
	기타					
합계						
	상고					
미제	심리중의기간	심리중				
		중단, 중지				
		계				
		법정기간내				
		초과 3월내				
		초과 6월내				
		초과 1년내				
		초과 1년초과				
					심사필	
담당자		과장				

- 주의
1. "상고"란에는 그 달에 상고제기된 건수를 계기한다.

2. "항소취하"란에는 취하간주된 사건도 합산 계기한다.

보고례민제4호(월보)

민사 신 청 사건표

197

항 고

법원

구분		처리	수리			기 제					미제				
			전달미	달제	이달수리	계	기 각	취소변경	취하	기 타		계			
항 고	보통				()						()				
	즉시				()						()				
	계			()	()	()	()	()	()	()	()				
신 청	가압류 · 가처분				()						()				
	강제 집행 정지				()						()				
	기 피				()						()				
	판 결 경 정				()						()				
	가압류 에대한 이의				()						()				
	가처분				()						()				
	기 타				()						()				
계			()	()	()	()	()	()	()	()	()				
합 계			()	()	()	()	()	()	()	()	()				
비 고												심 사 필			
												담 당 자		과 장	

- 주의
1. "항고"란에는 항고법원으로서 한 사건을 계기한다.

2. "신청"란에는 민사신청 사건부에 등재된 사건과 문서건명부에 등재된 사건으로 판사의 재판을 요하는 사건을 계기한다.

3. 항소심에서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의 재판에 대한 준항고(민소제411조제3항)사건은 "신청"의 "기타"

- 란에 계기한다.
4. ()내에는 매월 누계를 계기한다.

보고례민제5호(월보) 제1심 민 사 사 건 표 법원									
197 . . .									
처 리 \ 구 분		단 독	합 의	계	누 계	비 고			
수 리	전 달 미 제								
	이 달 수 리								
	계								
기 제	소장각하명령								
	판 결	원 승							
		일 부 원 승							
		원 패							
		각 하							
		계							
	소 취 하								
	화 해								
	인 락								
	이 송								
	기 타								
	합 계								
	항 소								
미 제	심 리 중						심 사 필		
	중 단, 중 지								
	계								
	심 리 중 의 기 간	법정기간내					담 당 자		과 장
		초과 3월내							
		" 6월내							
		" 1년내							
		1년 초과							

- 주의
1. "소취하"란에는 취하간주된 사건도 합산계기하고 비고란에 취하간주 건수를 계기한다.
2. "항소"란에는 그달중에 제기된 항소사건수를 계기한다.

보고례민제6호(월보) 민사신청사건표 법원									
197 . . .									
구분	처리	수 리			기 제				미제
		전 달 미 제	이 달 수 리	계	인 용	기 각	기 타	계	
파 산				()				()	
화 의				()				()	
화 해(제소전)				()				()	
소 송 구 조				()				()	
소 송 비 용				()				()	
증 거 보 전				()				()	
공 시 최 고				()				()	
공 조				()				()	
가 압 류 · 가 처 분				()				()	
강 제 집 행 정 지				()				()	
기 피				()				()	
판 결 경 정				()				()	
가압류에 대한 이의 가처분				()				()	
비소송사건절차법에 의한				()				()	

비송사건(호적 · 등기제외)													
기 타			()				()						
계		()	()	()	()	()	()						
비 고										심 사 필			
										담		과	
										당			
										자			

- 주 의
1. "화해"란에는 민사소송법 제355조(제소전 화해신청)의 규정에 의한 사건을 제기하고 화해성립이 되었을 때는 "인용"란에, 불성립되었을 때에는 "기타"란에 제기한다.
 2. "증거보전"은 보전절차가 완료되었을 때 기제로 하여 "인용"란에 제기한다.
 3. "공조"란에는 타법원으로부터 증거조사등을 촉탁받은 사건을 제기하고 조사완료후 기록을 촉탁법원으로 송부했을 때 "인용"란에 제기한다.
 4. "공시최고"의 기제는 지정기일에 신청인이 불출석으로 신청이 취하(의제)되었거나 기일에 제권판결 신청이 이유없다고 각하되거나 또는 제권판결의 선고가 있을 때를 각기제로 하고 채권판결의 선고가 있을 때에는 "인용"란에 제기하고, 기타의 경우는 "기각"란에 제기한다.
 5. "기타"란에는 민사신청사건부에 등재된 사건으로 사건표 분류의 어느것에도 속하지 않는 사건 (예, 준향고사건등)과 문서건명부에 등재된 사건으로 법원 또는 재판장의 처분을 요하는 사건 전부를 제기하고, 비고란에 설명한다. 따라서 집행문부여등 서기의 처분을 요하는 사건은 제기하지 않는다.
 6. ()내에는 매월 누계를 제기한다.

보고례민 제7호(월보)민사독촉사건표			법원		
197 . . .					
구분		처리	건 수	누 계	비 고
수	전 달 미 제				
	이 달 수 리				
	계				
기	각 하				
	지 급 명 령				
	계				
미 제					
가 집 행 선 고					
이의 신청	선 고 전 이 의				
	선 고 후 이 의				

				심 사 필		
담 당 자		과 장				

관한 소송																
증 권																
회사에 관한소송																
금 전	대여금															
	물품대금															
	수표 및															
	어음금															
	손해배상															
	기 타															
계																
기 타																
합 계																
비 고																

- 주 의
1. 병합청구사건은 주된 청구사건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2. 항소심에서 원판결을 취소하고 환송, 이송한 경우에는 비고란에 설명한다.3. 상고심에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재판한 경우에는 비고란에 설명한다.
 4. 「강제집행에 관한 소송」란에는 청구이의 소 강제집행에 대한 제삼자이의 소집행방법에 관한 이의 소등을 제기한다.
 5. 「회사에 관한 소송」란에는 주주총회결의 무효, 취소등의 소를 제기한다.

보고례민 제12호(기보)		제1심민사사건종류별건수표										법원			
197															
종류	처리	수리			기제								항소	미제	
		전기 미제	본기 수리	계	판결	각하	소 취 하	화해	인락	이송	기타	계			
토지															
건물															
선박															
미곡															
물품															
전세및임대차															
강제집행에 관한 소송															
증 권															
회사에 관한소송															
금 전	대여금														
	물품대금														
	수표 및														
	어음금														
	손해배상														
	기 타														
계															
기 타															
합 계															
비 고															
		심 사 필													
		담당자				과장									

주의 1. 보고례민 제11호 상고심 민사사건 종류별 건수표 주의사항과 같다.

보고례민 제13호(연보)	민사소송금액및가액별건수표	법원
---------------	---------------	----

197 . . .				
구분		단 독	합 의	계
종별				
금 액 및 가 액 별 건 수	3만원까지			
	5 "			
	10 "			
	30 "			
	50 "			
	100 "			
	250 "			
	500 "			
	1,000 "			
	2,500 "			
	5,000 "			
	5,000만원 초과			
비재산권상청구건수				
계				
금 액				
가 액				
계				
첨 부 인 지 액				
비 고				
			심 사 필	
			담당자	과장

- 주 의
1. 소제기 당시의 금액 및 가액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2. 비재산권상의 청구와 금액 또는 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청구를 병합했을 때에는 "금액 및 가액"의 해당란에 건수를 계기한다.
 3. "금액 및 가액"란의 분류는
가. "금액" "가액"란에는 1년간 수리된 총사건의 "청구금액" 또는 "가액"별로 합산 계기한다.
나. 금액 및 가액을 병합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가액"란에 계기한다.
다. 비재산권상의 청구사건은 "가액"으로 계기한다.
(예 300,100원)

보고례민 제14호(연보)				상고심민사사건결과표				법원		
197 . . .										
원심판결 결 과				항소기 각	자 판			각하	기타	계
					원고승	원고일 부승	원고패			
제2심판결건수										
각 하 명 령										
판 결	상 고 기 각									
	파 기	자 판	원고승							
			원 고							
			일부승							
			원고패							
		환 송								
		이 송								
각 하										
소 취 하										
상 고 취 하										
화 해										
인 락										
기 타										

비 고	심 사 필			
	담당자		과장	

- 주 의
1. 종결된 사건을 원심판결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2. "상고취하"란에는 취하간주 사건도 합산 계기한다.

보고레민 제15호(연보)				항소심민사사건결과표				법원			
197											
결 과				원심판결	원고승	원 고 일 부 승	원고패	각 하	계		
				제 1 심 판 결 건 수							
각 하 명 령											
판 결	항 소 기 각										
	취 소	자 판	원 고 승								
			원 고 일 부 승								
			원 고 패								
			환 송								
		이 송									
	각 하										
소 취 하											
항 소 취 하											
화 해											
인 락											
기 타											
비 고											
						심 사 필					
						담당자				과장	

- 주 의
1. 보고레민 제14호 상고사건 결과표의 주의사항과 같다.

보고레민 제16호(연보)				민사소송관계인원표				법원			
197											
구 분				기 제 인 원 수							
				단 독		합 의		계			
당 사 자	원 고	본 인	자 연 인								
			법 인								
			비법인사단재단								
		대 리 인	변 호 사								
			비 변 호 사								
	피 고	본 인	자 연 인								
			법 인								
			비법인사단재단								
		대 리 인	변 호 사								
			비 변 호 사								
	계	본 인	자 연 인								
			법 인								
			비법인사단재단								
		대	변 호 사								

		계										
	취	하										
	기	타										
	합	계										
미 제	심	리	중									
	중	단,	중	지								
	계											
	심	법정기간내										
	리	초과3월이내										
	중	" 6월이내										
	의	" 1년이내										
기	1년초과											
간												
비 고												
심 사 필												
담당자 과장												

주의 1. 선거 일부 무효의 판결도 "원승"란에 계기한다.

보고례행제 2호(월보)													상고심행정소송사건표													법원												
197 . . .																																						
처리													종류			행정소송			기타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계			누 계			비 고										
수	전 달 미 제																																					
	이 달 수 리																																					
리	계																																					
기 제	각 하 명 령																																					
	판 결	기 각	변론경유																																			
			변론불경유																																			
		파 기	자 판																																			
			환 송																																			
			이 송																																			
			각 하																																			
	계																																					
	소 취 하																																					
	상 고 취 하																																					
기 타																																						
합 계																																						
미 제	심 리 중																					심 사 필 담 당 자 과 장																
	중 단, 중 지																																					
	계																																					
	심 리 중 의 기 간	법정기간내																																				
		초과3월이내																																				
		" 6월이내																																				
		" 1년이내																																				
	1년초과																																					

주 의

1. "기타 대법원권한에 속하는 사건"란에는 특허심판위원회의 심결이나 해난심판위원회의 심판에 불복이 있어 상고된 사건등을 계기하고 비고란에 설명한다.

(재)항고												
행정 사건표 법원												

\ \ 종 류 \				조세	공업 소유 권	귀속 재산	토지 수용	공용 부담	도시 계획	공무 원	학교 관계	기타	계				
수 리	\ 처 리 \																
기 제	전 기 미 제																
	본 기 수 리																
	계																
	각 하 명 령																
	판 결	기 각	변론경유														
			변론불경유														
		파 기	자 판														
			환 송														
			이 송														
			각 하														
	계																
	소 취 하																
상 고 취 하																	
기 타																	
합 계																	
미 제																	
비 고																	
														심 사 필			
														담당자		과장	

주의

1. "조세"란에는 과세처분 취소등 사건을 제기한다.2. "공무원"란에는 파면처분등에 관한 소송사건을 제기한다.
3. 「기타」란에는 위 분류이외의 사건을 합산 제기하고 비고란에 그 종류를 분류 제기한다.

보고례행 제6호(기보) 제1심행정소송사건종류별건수표													법원											
197 . . .																								
\		\		\		\		\		\		\		\										
종 별		조세		공업 소유 권		귀속 재산		토지 수용		공용 부담		도시 계획		공무 원		학교 관계		기타		계				
처 리																								
수 리	전 기 미 제																							
	본 기 수 리																							
	계																							
기 제	각 하 명 령																							
	판 결	원 고 승																						
		원 고 일 부 승																						
		원 고 패																						
		각 하																						
		계																						
	소 취 하																							
	이 송																							
	기 타																							
합 계																								
상 고																								
미 제																								
비 고																								
													심 사 필											
													담당자				과장							

주의

1. 보고례행 제5호 상고심 행정소송 종류별표 주의사항과 같다.

보고례행 제7호(기보)				행정소송사건기제기간별건수표				법원			
197 . . .											
\				행정 또는 특허 사건등				계			
				판 결		기 타					
\ 구 분											
\ 기 간 \											
1 월 이 내											
2 월 이 내											
3 월 이 내											
4 월 이 내											
5 월 이 내											
6 월 이 내											
9 월 이 내											
1 년 이 내											
1년 6월 이 내											
2 년 이 내											
2 년 초 과											
계											
비 고								심 사 필			
								담당자		과장	

보고례행 제8호(연보)				상고심행정소송사건결과표				법원			
\ 원심판결				자 판			각 하	기 타	계		
				원고승	원고 일부승	원고패					
\											
\											
결 과 \											
제 1 심 판 결 건 수											
각 하 명 령											
판 결	상 고 기 각										
	파 기	자 판	원 고 승								
			원고일부승								
			원 고 패								
		환 송									
	이 송										
각 하											
소 취 하											
상 고 취 하											
기 타											
비 고								심 사 필			
								담당자		과장	

주의

1. 원심판결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보고례행 제9호(연보)			선거소송관계인원표			법원		
197 . . .								
구 분			인 원					
당 사 자	원 고		본 인					
			소 송 대 리 인					
	피 고		본 인					
			소 송 대 리 인					
	계		본 인					

		소	송	대	리	인	
비 고							
							심 사 필
							담당자
							과장

주의

1. 참가소송(보조참가제외)의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은 원고란에 계기한다.
2. 소송대리인란에는 변호사로서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인원수를 계기하되 복대리인은 계산치 않으며, 사건종결전에 사임 또는 해임됐을 때도 그 인원을 계산한다.

보고례행 제10호(연보)		행정소송관계인원표				법원			
197									
구		분				기 재 인 원 수			
당 사 자	원 고	본 인							
		소 송 대 리 인							
	피 고	본 인							
		소 송 대 리 인							
	계	본 인							
		소 송 대 리 인							
비 고									
						심 사 필			
						담당자		과장	

주의

1. 선거소송에 관계인원표 주의사항과 같다.

(3) 가 사

보고례가 제1호(월보)				상고심가사사건표				법원					
197													
\ 구 분				건 수			누 계		비 고				
\ 처 리				을 류	병 류	계							
수 리	전 달 미 제												
	이 달 수 리												
	계												
기 제	각 하 명 령												
	판 결 기	기 각	변론경유										
			변론불경유										
		파 기	자 판										
			환 송										
			이 송										
	각 하												
	계												
	심 판 청 구 취 하												
	상 고 취 하												
	화 해												
	기 타												
	합 계												
미 제	심 리 중												
	중 단, 중 지												
	계												
	심 리 중	법정기간내											
		초과3월이내											
		초과6월이내											
							심 사 필						

	의 기 간	초과1년이내					담 당 자		과 장	
		1년 초 과								

보고례가 제2호(월보)				항소심가사사건표				법원			
197											
\ 구 분			건 수			누 계		비 고			
\ 처 리			을 류 병 류 계								
수 리	전 달 미 제										
	이 달 수 리										
	계										
기 제	각 하 명 령										
	판 결	기 각									
		취 소	자 판								
			환 송								
			이 송								
			각 하								
		계									
		심 판 청 구 취 하									
	항 소 취 하										
	화 해										
	기 타										
	합 계										
	상 고										
미 제	심 리 중										
	중 단, 중 지										
	계										
	심 리 중 의 기 간	법정기간내									
		초과3월이내									
		초과6월이내									
		초과1년이내									
		1년 초 과									

(재) 항고									
보고례가 제3호(월보)			가사		사건표			법원	
신 청									
197 . . .									
\		수 리			기 제				미 제
		전달 미제	본월 수리	계	인용	기각	기타	계	
(재) 항고	갑류심판사건 항고			()					()
	기 타 항 고		()	()					()
	계			()	()	()	()	()	
신 청	신 청			()					()
	기 타 신 청			()					()
	계		()	()	()	()	()	()	

합	계		()	()		()	()	()	()	
비 고										
										심 사 필
			담당자			과장				

주의

1. "신청"란에는 신청사건부에 등재된 사건수를 계기한다.
2. "기타신청"란에는 문서건명부에 판사의 재판을 요하는 사건을 계기한다.
3. () 내에는 매월 누계를 계기한다.
4. 항고란에는 항고법원으로 처리한 사건을 계기한다.

보고레가제 4호(월보)				제1심가사사건표				법원						
197														
\ 구 분			건 수			누 계		비 고						
\ 처 리			을 류	병 류	계									
수 리	전 달 수 리													
	이 달 수 리													
	계													
기 제	각 하 명 령													
	심 판	청 구 인 승												
		청구인 일부승												
		청 구 인 패												
		각 하												
		계												
	취 하													
	이 송													
	화 해													
	기 타													
합 계														
항 소														
미 제	심 리 중													
	중 단, 중 지													
	계													
	심 리 중 의 기 간	법정기간내												
		초과3월이내												
		" 6월이내												
		" 1년이내												
	1년 초 과											심 사 필		
												담 당 자		과 장

주 의

1. 인락으로 종결된 사건은 화해란에 계기하고, 비고란에 설명한다.
2. 취하란에는 취하간주된 사건도 합산계기하고, 비고난에 설명한다.
3. 미제난 중지에는 조정에 회부된 건수를 주서로 계기한다(내서).
4. 심리중 기간에는 조정회부중인 기간은 산입치 않는다.(가심판규칙16조1항)

갑류									
보고레가 제5호(월보)			가사 () 사건표				법원		
신청									
197 . . .									
\			수						

종 별 \		미 제	수 리						
가사 갑류 심판 사건	한정치산, 금치산								
	부재자의 재산관리등								
	실 종 선 고								
	자의성과 본의창설								
	일 가 창 립								
	부 부 재 산 약 정								
	사 후 양 자								
	친권에 관한 사건								
	후견에 관한 사건								
	친족회에 관한 사건								
	상속에 관한 사건								
	유언에 관한 사건								
	계								
신청 사건	가 압 류 · 가 처 분								
	선 고 전 처 분								
	이 행 명 령								
	공 조 사 건								
	기 타								
	계								
기 타									
합 계									
비 고									
						심 사 필			
						담당자		과장	

주 의

1. 가사갑류심판사건 난에는
- (1)난에는 가사심판법2조1항 갑류 가호를

(2)난에는 가사심판법2조1항 갑류 나호를

(3)난에는 가사심판법2조1항 갑류 다호를

(4)난에는 가사심판법2조1항 갑류 라호를

(5)난에는 가사심판법2조1항 갑류 마호를

(6)난에는 가사심판법2조1항 갑류 바호를

(7)난에는 가사심판법2조1항 갑류 사 - 자호를

(8)난에는 가사심판법2조1항 갑류 차 - 거호를

(9)난에는 가사심판법2조1항 갑류 너 - 러호를

(10)난에는 가사심판법2조1항 갑류 머 - 커호를

(11)난에는 가사심판법2조1항 갑류 러 - 너호를
- 각 기재한다.
2. 신청사건 "기타"난에는 가사심판법 41조, 42조에 의한 과태사건과 사건표의 신청분류중 별도 분류되지 아니한 사건을 계기하고 비고란에 설명한다.
3. "기타"란에는 문서건명부에 등재된 사건으로 법원의 처분을 요하는 사건을 계기한다.

보고례가 제6호(월보)		가사조정사건표				법원			
197									
\ 구 분		조 정			누 계	비 고			
\ 처 리		신 청	직 권	계					
수 리	전 달 미 제								
	이 달 수 리								
	계								

비 고	심 사 필			
	담당자		과장	

보고례가 제10호(연보)		임 치 사 건 표		법원	
197					
\ 구 분 \ 처 리 \		이 달		누 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수리	전년미제				
	본년수리				
	계				
출 급	지 급				
	반 환				
	계				
미 제					
비 고					
		심 사 필			
		담당자		과장	

보고례가 제11호(연보)		가사사건금액및가액별건수표		법원	
197					
종 별 \ 구 분		조 정	심 판	계	
금 액 및 가 액	3만원 까지				
	5 "				
	10 "				
	30 "				
	50 "				
	100 "				
	250 "				
	500 "				
	1,000 "				
	2,500 "				
	5,000 "				
	5,000 만원초과				
	비재산권 청구				
	계				
금 액					
가 액					
계					
첨 부 인 지 액					
비 고					
			심 사 필		
			담당자		과장

보고례가 제12호(연보)		상고심가사심판사건결과표			법원			
197 . . .								
\ 원심판결		항소기각	자 판			각 하	기 타	계
\			원고승	원 고	원고패			
\				일부승				

결 과 \										
제 2 심 판 결 건 수										
각 하 명 령										
판 결	상 고 기 각									
	파 기	자 판	원 고 승							
			원고 일부승							
			원 고 패							
		환 송								
	이 송									
각 하										
소 취 하										
상 고 취 하										
화 해										
인 낙										
기 타										
비 고										
				심 사 필						
				담당자			과장			

- 주 의
1. 종결된 건수를 원심결과별로 분류 계기한다.
 2. 항소취하란에는 취하간주 사건도 합산 계기한다.

보고례가 제13호(연보)				항소심가사심판사건결과표		법원		
197								
\ 원심판결				원 고 승	원 고 일 부 승	원 고 패	각 하	계
결 과 \								
제 1 심 판 결 건 수								
각 하 명 령								
판 결	항 소 기 각							
	취 소	자 판	원 고 승					
			원고 일부승					
			원 고 패					
		환 송						
	이 송							
각 하								
소 취 하								
항 소 취 하								
화 해								
인 낙								
기 타								
비 고								
						심 사 필		
						담당자		과장

- 주 의
1. 보고례가 제13호 상고심 가사심판사건 결과표 주의사항과 같다.

보고례가 제14호(연보)		이혼사건원인별표(1)					법원	
(가) 학력별		197 . . .						
\ 피청구인	무 학	국 민	중학교	고 등	대학교	대학원	외 국	계
청구인 \	학 교	학 교		학 교			유 학	
무 학								
국 민 학 교								
중 학 교								
고 등 학 교								

대 학 교											
대 학 원											
외 국 유 학											
계											
(나) 사유별 및 동거기간											
\ 청구인 및 \ 동거기간 \ 원인별 \	청 구 인				동 거 기 간						
	남	여	계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5년 이내	10년 이내	10년 초과	계
부 정 행 위											
악 의 의 유 기											
학 대											
학 대 를 받 았 을 때											
3년 이상 생사 불명											
기 타											
계											

이혼사건원인별표(2)										법원	
(다) 직업별										197 . . .	
\ 여 자 남 자 \	청 구 인		피 청 구 인		자 녀 수					계	
	남	여	남	여	무자	1인	2 인	3인	5인 이 상		
농 어 업											
노 무 자											
종 업 원											
상 업											
군 인											
회 사 원											
교 육 자											
공 무 원											
자 유 업											
무 직											
기 타											
계											
(라) 연령별											
남 \ 여	20세이하		30세이하		40세이하		50세이하		50세이상		계
20 세 이 하											
30 세 이 하											
40 세 이 하											
50 세 미 만											
50 세 이 상											
계											
비 고											
							심 사 필				
							담당자		과장		

보고례가 제15호(연보)			가사심판사건관계인원표			법원		
197 . . .								
구		분				기 제 인 원 수		
당 사 자	청 구 인	본 인						
		소 송 대 리 인						
	피 청 구 인	본 인						
		소 송 대 리 인						

비 고	계	본 인			
		소 송 대 리 인			
			심 사 필		
		담당자		과장	

(4) 형 사

보고례형 제1호(월보)						상고심형사사건인원수표						법원			
197 . . .															
\ 구 분						합 의		단 독		군 재		계		누 계	
\ 처 리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수 리	전 달 미 제														
	이 달 수 리														
	계														
기 제	판 결	파 기	자 판	형 의 선 고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자격형										
					재산형										
			선 고 유 예												
			무 죄												
			형의면제 면소												
		환 송													
		이 송													
	상 고 기 각	변 론													
		변 론 불 경 유													
	상 고 취 하														
	기 타														
계															
미 제	심 리 중														
	정 지														
	계														
	심 리 중 의 기 간	3 월 이 내													
		6 월 이 내													
		1 년 이 내													
		2 년 이 내													
		2 년 초 과													
비 고												심 사 필			
												담당자		과장	

주 의

1. 당사자 쌍방이 상고한 사건에 관하여 일방의 상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원판결을 파기하였을 경우에는 해당란에 계기하고 타방에 대한 상고기각의 표시는 요치 않는다.
2. 비상상고 사건은 주서외서하고 △표를 부치고 비약상고사건은 주서외서하고 ※표를 부친다.
3. "상고기각"란중 "변론"란에는 형사소송법 제388조(변론방식)에 의하여 "변론불경유"란에는 형사소송법 제390조(서면심리에 의한판결)에 의하여 판결로서 기각한 사건의 인원을 계기한다.
4. "기타"란에는 형사소송법 제380조 내지 제382조(상고기각결정)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한 사건의 인원을 계기한다.

197 . . .									
\ \ 구 분					인 원 수		누 계		
					구 속	불구속	구 속	불구속	
\ 처 리									
수 리	전 달 미 제								
	이 달 수 리								
	계								
기 제	판 결	파 기 ^ 취 소 V	자 판	형의 선고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자격형				
					재산형				
		선 고 유 예							
		무 죄							
		형의면제 면소							
		환 송							
	이 송								
	항소	변 론							
	기각	변 론 불 경 유							
	소 년 부 송 치								
취 하									
기 타									
계									
상 고									
미 제	심 리 중								
	정 지								
	계								
	심 리 중 의 기 간	3 월 이 내							
		6 월 이 내							
		1 년 이 내							
		2 년 이 내							
2 년 초 과									
비 고									
					심 사 필				
					담당자		과 장		

- 주의
1. 당사자 쌍방이 항소한 사건에 관하여 1방의 항소가 이유 있다고 원심을 파기하였을 때에는 해당란에 제기하고 타방에 대한 항소기각의 표시는 요치 아니 한다.
 2. "항소기각"란중 "변론"란에는 형사소송법 제364조제4항에 의하여 "변론불경유"란에는 동조제5항에 의하여 판결로서 기각한 사건의 인원을 계기한다.
 3. "기타"란에는 형사소송법 제8조(사건의 직권이송)에 의한 이송 또는 동법 제361조의4나 제362조에 의하여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한 사건의 인원을 계기한다.
 4. "상고"란에는 그 달 중에 한 판결에 한하지 않고, 그 달 중에 제기된 상고사건의 인원을 계기하고, 제376조(원심법원에서의 상고기각 결정)에 의하여 인원은 주서외서하고 △표를 부친다.

보고례형 제3호(월보)										제1심형사사건인원수표		
법원												
197 . . .												
\ 구 분		합 의		단 독		계			누 계			
\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약식	구속	불구속	약식	

처 리														
수 리	전 월 미 제													
	이 달 수 리													
	계													
기 제	판 결	형 의 선 고	생 명 형											
			자 유 형											
			집 행 유											
			예											
			자 격 형											
		선 고 유 예	재 산 형											
	결 정	무 죄												
		형 의 면 제, 면 소												
		관 할 위 반												
		공 소 기 각												
		공 소 기 각												
계	소 년 부 송 치													
	기 타													
상 소 및 정 식 재 판 청 구														
미 제	심 리 중													
	정 지													
	영 구 미 제													
	계													
	심 리 중 의 기 간	3 월 이 내												
		6 월 이 내												
		1 년 이 내												
		2 년 이 내												
2 년 초 과														
비 고														
심 사 필														
담당자 과장														

- 주 의
- "기타"란에는 형사소송법 제7조 내지 제10조에 의하여 이송한 사건을 계기한다.
 - "상소 및 정식재판 청구"란에는 그 달 중에 한 판결에 한하지 아니하고, 그 달 중에 제기된 항소 및 비약상고사건을 계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60조(원심법원에서의 항소기각 결정) 또는 제376조(원심법원에서의 상고기각 결정)에 의하여 기각한 사건은 주서외서하고 △표를 부친다.
 - "약식"사건은 재산형등 처분된 각 해당란에 그 인원을 계기하고, "상소 및 정식재판청구"란에는 그 달에 기재된 인원 관계없이 그 달에 정식재판 청구한 인원을 계기한다.

보고례형 제4호(월보)				형사신청사건표						법원		
197												
\		처 리		수 리		기 제				항 고	미 제	
						계 정						
		전달 미제	이달 수리	계	인용	기각	기타	계	취하 기타			계
종 류 \												
신 청	구속적법여부심사				()				()		()	
	보 석				()				()		()	
	형집행유예취소				()				()		()	

	증거보전			()				()		()		
	기피			()				()		()		
	압수물환부, 가환부			()				()		()		
	상소권회복			()				()		()		
	형사보상			()				()		()		
	기타		()	()	()	()	()	()	()	()		
	계			()				()		()		
공조			()				()		()			
준항고			()				()		()			
합계		()	()	()	()	()	()	()	()			
비고												
심사필												
담당자 과장												

- 주의
1. "계정"란중 "인용"에는 허가(보석등)와 석방구속적법여부심사등 신청이 이유있음의 결정을 한 경우에 계기한다.
 2. "항고"는 그 달에 결정된 건수와는 관계없이 그 달에 항고된 건수를 계기한다.
 3. 항고된 사건중 원심법원에서 취하, 기각, 경정된 사건은 "비고"란에 계기한다. ()내는 매월 누계를 계기한다.

보고례형 제5호(월보)		즉결사건인원수표				법원					
197											
\ 구 분		형 법 범		특 별 법 범		계		누 계			
\ 처 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수리	전 달 미 제										
	이 달 수 리										
	계										
기제	형 의 선 고	구 류									
		벌 금									
	과 료										
		선 고 유 예									
	무 죄										
	형 의 면 제										
	검 찰 청 송 치										
	소 년 부 송 치										
	기 타										
	계										
정 식 재 판 청 구											
미 제											
비고											
심사필											
담당자 과장											

- 주의
1. 정식재판 청구는 그 달에 신고된 인원수에 한하지 아니하고, 그 달에 청구한 인원수를 계기한다.

보고례형 제6호(월보)		영장발부인원 및 기소인원수표				법원	
197							
\ 처 리		신 청	발 부	기 각	구 속 기 소	반 환	

구 분 \					인 원 수	
구속영장	수사	검사(수사관 포함)				
		경 찰				
		기 타 기 관				
		계				
	형 의 집 행					
	직 권					
합 계						
수 색 영 장						
비 고						
심 사 필						
담당자			과장			

주의

1. 1인에 대하여 수통을 발부한 것은 그 인원과 통수를 "비고"란에 계기한다.
2. 구속기소 인원수는 그 달에 발부한 인원수는 관계없이 그 달에 구속 기소된 인원을 계기한다.

보고례형 제7호(월보)			형사 항 고 사건표				법원					
재 항 고												
197												
\		처 리		수 리			기 제			미 제		
							결 정					
				전달 미제	이달 수리	계	인용	기각	계		취하 기타	합계
종 류 \												
구속적부심사의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						()			()		()	
보석불허 결정에 대한 항고						()			()		()	
기타 결정에 대한 항고						()			()		()	
계					()	()	()	()	()	()	()	
비 고												
심 사 필												
담당자						과 장						

주의

1. "결정"란중 "인용"이란 항고가 이유있음을 인정한 것을 말하고, "기타"는 기각, 각하, 이송등을 말한다.
2. 항고법원 또는 재항고법원으로서 수리 처리한 사건을 계기한다.
()내는 매월 누계를 계기한다.

보고례형 제8호(월보)		벌 과 금 액 표			법원	
197 . . .						
벌과금종별 \ 구	공 판	약식명령	즉 결	과태료사건	계	
분						
벌 금						
과 료						
과 태 료						
몰 수 금						
계						
누 계						
비 고						
			심 사 필			
			담당자		과 장	

주 의

1. 각심급에서 이달에 확정된 사건에 의하여 계기한다.

2. 항소심, 상고심에 있어서 기각판결 또는 상소취하하여 원심판결대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원심선고 액수를 계기한다.
3. 재심사건에 있어서 무죄등을 선고하여 재산형이 변경확정되었을 때에는 원판결수액을 주서외서한다.
(비상상고의 경우도 같이 처리할 것)
4. 미결통산 일수에 해당하는 액수는 판결수액에서 공제 한다.
5. 과태료 사건에는 비송사건 절차법 제276조에 의한 사건을 계기한다.
6. 몰수금에 있어서 외화가 있을 때에는 다음 예시에 의하여 외서한다.

일화는	¥
미화(군표포함)	\$

기타 외국화는 국명을 표시하고 액수를 계기한다.
7. 추징금은 몰수금란에 계기한다.

모고례형 제9호(기보)										상고심형사사건죄명별재판인원수표										법원			
197																							
처 리		\ 죄 명																계		누 계			
수 리	전 기 미 제																						
	본 기 수 리																						
	계																						
기 제	판 결	파 기	자 판	징역 또는 금고	사 형																		
					유 기	무 기																	
						정 기	10년이상																
							5년이상																
							3년이상																
							1년이상																
							1년미만																
							집행유예																
					부 정 기																		
					자 격 정 지																		
				별 금																			
				선 고 유 예																			
				무 죄																			
				형 의 면 제 면 소																			
				환 송																			
				이 송																			
				상고 변 론 경 유																			
기각 변 론 불 경 유																							
취 하																							
기 타																							
계																							
미 제																							
비 고																							
												심 사 필											
												담당자				과장							

주 의

1. 상고심 형사사건 인원수표(월보)의 1, 2, 3, 4호를 참조할 것.

보고례형 제10호(기보)					향소심형사사건죄명별재판인원수표					법원			
197													
처 리		\					죄 명					계	누 계
수 리	전 기		미 제										
	본 기		수 리										
	계												
기 제	판 결	파 기	자 판	징 역	사 형								
					유 무	기							

심 사 필			
담당자		과장	

- 주 의
1. 제1심 형사사건 인원표(월보) 1, 2를 참조한다.

보고례형 제12호(기보)		악식명령사건죄명별처리인원수표						법원	
1970 . . .									
처 리 \ 죄 명								계	누 계
수 리	전 기 미 제								
	본 기 수 리								
	계								
기 제	벌 금								
	과 료								
	몰 수								
	기 타								
	계								
미 제									
정 식 재 판 청 구 비 고	직 권 공 판 회 부								
	피 고 인, 검 사								
	정 식 재 판 청 구								
	계								
		심 사 필							
		담당자		과장					

- 주의
1. "정식재판청구"는 그 달에 기재된 인원에 관계없이 그 달에 청구한 인원수를 계기한다.
2. "정식재판청구"란의 "피고인 검사 정식재판 청구"란에 검사가 청구한 사건은 주서내서하고 ×표시를 한다.

보고례형 제13호(기보)		즉결사건죄명별인원수표						법원	
1970 . . .									
\ 죄 명								합 계	
\									
처 리 \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수 리	전 기 미 제								
	본 기 수 리								
	계								
기 제	형 의 선 고	구 류							
		벌 금							
		과 료							
	선 고 유 예								
	무 죄								
	형 의 면 제								
	검 찰 청 송 치								
	소 년 부 송 치								
	기 타								
	계								
정 식 재 판 청 구									

미	제								
비 고									
		심 사 필							
		담당자		과장					

주의

1. 정식재판청구는 그 달에 기재된 사건과는 관계없이 그 달에 청구한 인원만을 계기한다.

보고례형 제14호(기보)		국선번호인선정사건표				법원			
1970									
\ 선정 및 보수액		선 정		보 수 지 급			여 비 및 기 타		
\ 지급건수		건수	인원	건수	인원	지급액	건수	인원	지급액
선정사유 \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미 성 년 자									
70 세 이 상 의 자									
농 아 자									
심 신 장 애 자									
빈곤 기타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단 피 고인의 청구에 한함)									
기 타									
계									
비 고									
		심 사 필							
		담당자		과장					

주의

1. 선정사유가 중복될 때에는 그 중 한 사유란에만 계기한다.

보고례형 제15호(기보)		재정신청사건죄명별인원수표				법원			
1970									
\ 죄 명 별						계		누 계	
\ 건수인원 \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처 리 \									
수 리	전 기 미 제								
	분 기 수 리								
	계								
기 제	부 심 판								
	기 각								
	취 소								
	기 타								
	계								
미 제									
비 고									
		심 사 필							
		담당자		과장					

주의

1. 취소란 형사소송법 제264조에 의하여 신청인과 그 대리인이 부심판이나 기각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신청을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2. 불기소 처분청인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별 수리건수를 비교란에 구분 계기한다.

보고례형 제16호(기보)		형사사건기제기간별인원수표				법원	
1970 . . .							
\ 구 분 기간별 \		합 의		단 독		계	
		구 속	불 구 속	구 속	불 구 속	구 속	불 구 속
1 월 이 내							
2 월 이 내							
3 월 이 내							
4 월 이 내							
5 월 이 내							
6 월 이 내							
9 월 이 내							
1 년 이 내							
2 년 이 내							
3 년 초 과							
계							
비 고							
심 사 필							
담당자			과장				

보고례형 제17호(연보)		상고심 형사사건결과인원수표										법원		
항소심														
197 년 월 일														
\ 원심형 결 과 \				형 의 선 고						선고 유예	무죄	형의 면제 면소	기타	계
				사형	무기	징역	금고	집행유예	벌금					
제 2 (1) 심 판 결 인 원														
원심	불 변 경													
판결	변 경													
상 고 심 ^ 항 소 심 v 결 과	파 기 ^ 취 소 v	자 판	형 의 선 고	사 형										
				무 기										
				징 역										
				금 고										
				집 행 유 예										
				벌 금										
			선 고 유 예											
			무 죄											
			형의 면제 · 면소											
		환 송												
		이 송												
		동일 형명	중 (중)											
			경 (경)											
기 타 변 경														
기 타														
비 고														
심 사 필														
담당자				과장										

- 주 의
- "원심판결"의 "불변경"란에는 상고(항소)가 취하된 경우와 상고(항소) 기각된 경우에 계기하고, "변경"란에는 상고(항소)가 이유있어 원심판결을 파기(취소)하여 형명, 형기, 벌금액이 변경된 경우등에 계기한다.
 - 항소법원 또는 상고법원에서 원심법원의 판결을 파기하여 형명 또 선고유예, 무죄, 면소등의 판결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결과를 각

3. 또 원심법원의 형명에는 변경이 없을지라도 원심법원의 판결을 파기하여 형기 또는 금액에 변경이 있는 것은 그 경중을 비교하여 "동일형명"의 "중(중)" 또는 "경(경)"란에 계기한다. 4. 또 원심법원의 판결을 파기하였으나 형명, 형기 및 금액과 무죄·면소등에 변경이 없을 경우에는 "기타변경"란에 계기한다.
5. "기타"란은 자격정지, 구류, 과료, 공소기각등을 계기한다.

주 의

1. "총건수"와 "청구일수"란에는 전년도 미제건수와 일수를 합산 계기한다.
2. 일부보상 일부기각의 경우에는 "보상"란에 계기하고 "기각"란에 계기치 아니한다.
3. "사형"란에 건수를 "일수"란에 일수를 "금액"란에는 금액으로 각 표시한다.

[illegible]

	5 년 이내	18세미만																
		20세미만																
		장기	16세미만															
	3 년 이내	18세미만																
		20세미만																
		장기	16세미만															
	2 년 이내	18세미만																
		20세미만																
		집행유예	16세미만															
18세미만																		
20세미만																		
벌금	16세미만																	
	18세미만																	
	20세미만																	
구류과료	16세미만																	
	18세미만																	
	20세미만																	
무죄	16세미만																	
	18세미만																	
	20세미만																	
기타	16세미만																	
	18세미만																	
	20세미만																	
계	16세미만																	
	18세미만																	
	20세미만																	
"주의" 보고례소 제4호 (Ⅰ) (Ⅱ)와 같다.									심사필									
									담당자				과장					

보고례형 제20호(연보)			형 사 소 송 관 계 인 원 표				법원		
197 . . .									
\ 기 제 \ \ \ 구 분 \			기 제 건 수				계		
			공 판 청 구						
			단 독	합 의					
피 고 인	자 연 인	1 인	건	건	건				
		2 인	"	"	"				
		3 인	"	"	"				
		5인이내	"	"	"				
		7인이내	"	"	"				
		10인이내	"	"	"				
		10인초과	"	"	"				
	법 인		"	"	"				
계		"	"	"					
비 고									
						심 사 필			
						담당자		과장	

주 의

동일 사건의 피고인중에 자연인과 법인이 공동피고인일 경우에는 자연인과 법인을 합한 수의 자연인란에 계기하고 법인란에는 계기치 아니한다.

(5) 소년 보호

보고례소 제1호(월보)														소년보호사건인원수표														법원	
197 . . .																													
\ 죄명 \														형법범		특별법범		계		우범		합계		누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 성별 \																													
처리 \																													
수리	전월미제																												
	이달수리	법관송치																											
		검사송치																											
		경찰국장 또는 서장송치																											
		타 소년부에서 송치																											
		제4조제3항에 의한																											
		통고사건																											
	계																												
합계																													
기제	보호처분	보호자 또는 적당한 자																											
		의 감호에 위탁																											
		사원 교회 기타 소년																											
		보호단체에 위탁																											
		병원 기타 요양소에																											
		위탁																											
		감화원에 송치																											
		소년원에 송치																											
	불처분	보호관찰																											
		계																											
		심리불개시																											
		타 소년부에 이송																											
		검찰청 송치																											
		기타																											
합계																													
항고																													
미제																													

	교																
	공민학교	재학															
		중퇴															
		졸업															
	고등공민학교	재학															
		중퇴															
		졸업															
	기타	재학															
		중퇴															
졸업																	
불취학(불취학)																	
계																	
비고																	
										심사필							
										담당자		과장					

- 주 의
1. 보고레소 제6호 행위원인별표 주의사항과 같다.

보고레소 제9호(연보)																		보 호 소 년 환 경 표																	
법원																																			
197 . . .																																			
\																		보호자 또는 적당한 자의 감호위탁		사원 교회 기타 소년 보호단체에 위탁		병원 기타 요양소에 위탁		감화원 에송치		소년원 에송치		보관 호찰		계		남 합		녀 계	
구 분 \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경우 ^ 경우 v	가정 에 있 는 자	실부모																																	
		양부모																																	
		계부모																																	
		실부양계모																																	
		양계부실모																																	
		실부																																	
		실모																																	
		양계부																																	
		양계모																																	
		형자(형자)																																	
		기타																																	
		계																																	
	가정 외 에 있 는 자 합	친척																																	
		타인																																	
		하숙																																	
		기숙사																																	
		자활																																	
		주거부정																																	
		기타																																	
		계																																	
출생 별	계																																		
	혼인중 출생자																																		
	혼인외 출생자																																		
	미상(미상)																																		
계																																			
비고																																			

	심 사 필			
	담당자		과장	

- 주 의
1. 보고레소 제6호 행위원인별표 주의사항과 같다.

(6) 등 기

보고레등 제1호(월보)				등 기 사 건 표			법원		
197									
\ 구 분		건 수	개 수	등 록 세	누 계				
\ 종류 \					건 수	개 수	등 록 세		
부 동 산				원 :			원 :		
선 박				:			:		
상 업 등 기				:			:		
비영리법인 등기				:			:		
기 타				:			:		
계				:			:		
\ 구 분		건 수	개 수 또 는 통 수	수 수 료	누 계				
\ 종류 \					건 수	개수 또는 통 수	수 수 료		
등 초 본				원 :			원 :		
열 람				:			:		
확 정 일 자				:			:		
인 감 증 명				:			:		
기 타				:			:		
계				:			:		
비 고									
					심 사 필				
					담당자		과장		

- 주 의
1. 열람은 개수로 등초본 및 기타는 통수로 계기한다.

보고레등 제2호(기보)		부동산 및 선박등기종류별건수표				법원			
197									
\		구 분		총 수 리		수리 중 각하사건		누 계	
		\		건 수	개 수	건 수	개 수	총 수 리	
								건 수	개 수
종 류 \									
소 유 권 보 존	부동산								
	선 박								
매 매 에 인 한	부동산								
	선 박								
소 유 권 이 전	부동산								
	선 박								
기 타 원 인 에	부동산								
	선 박								
인 한	부동산								
	선 박								
소 유 권 이 전	부동산								
	선 박								
전 세 권 설 정	부동산								
	선 박								

저 당 권 근 저 당 권 설 정	부동산						
	선 박						
지 상 권 기 타 권 리 의 설 정	부동산						
	선 박						
변 경 및 말 소	부동산						
	선 박						
기 타	부동산						
	선 박						
계	부동산						
	선 박						
비 고							
				심 사 필			
				담당자		과장	

- 주 의
1. 공장재단, 기타재단의 등기사건은 본표중 해당하는 란에 합산계기하고, "비고"란에 그 건수와 등록세액을 계기한다.
 2. "변경 및 말소"란에는 부기등기, 부동산 표시의 변경 및 경정등기를 합산계기한다.
 3. 열람은 개수로 등초본 및 기타는 통수로 계기한다.

보고레등 제3호(연보)		상 업 등 기 사 건 표					법원	
197								
구 분 종 류		건 수						등 록 세
		설 립	지 점 설 치	사 채 발 행	해 산	등기사항 변경기타	합 계	
합명회사	본점							:
	지점							:
합자회사	본점							:
	지점							:
주식회사	본점							:
	지점							:
유한회사	본점							:
	지점							:
외국회사	본점							:
	지점							:
상 호 (상 호)	본점							:
	지점							:
지 배 인	본점							:
	지점							:
기 타								:
합 계	본점							:
	지점							:
	기타							:
	계							:

종 류 \ 구 분	건 수	통 수	수 수 료
등 초 본			:
열 란			:
기 타			:
계			:
비 고			
		심 사 필	
		담당자	과장

보고례등 제4호(연보)비영리법인등기사건표법원							
197 . . .							
\구분 \\ 종류 \		건수					등록세
		설립	사채발행	해산	등기사항 변경기타	계	
민법에 규정한 법인	주사무소						:
	종사무소						:
각종 조합	주사무소						:
	종사무소						:
기타	주사무소						:
	종사무소						:
계	주사무소						:
	종사무소						:
\구분 종류 \		건수		통수		수수료	
등초본						:	
열람						:	
기타						:	
계						:	
비고							
				심사필			
				담당자		과장	

보고례등 제5호(연보)부부재산약정등기사건표법원					
197 . . .					
종별	건수				등록세
	등기	등기사항변경기타	계		
부부재산약정					원:
종별	건수				수수료
	열람	등본초본	기타	계	
					원:
비고					
				심사필	
				담당자	

보고례등 제6호(연보)공증인법제8조에의한공증사건표법원						
197 . . .						
\구분 \\ 종류 \		건수	수입금액			
			수수료	일당	여비	합계
법률행위			:	:	:	원:
확정일자및			:	:	:	:
신탁일자부여			:	:	:	:
기타			:	:	:	:
계			:	:	:	:
비고						
				심사필		
				담당자		과장

--	--	--	--	--

(7) 기 타

보고례기 제1호(월보)					호 적 비 송 사 건 표					법원					
197															
\		종 류	호 적 법 위 반	취 적	개 명	호적정정		기 타	계	누 계					
						연 령 정 정	기 타 정 정			호 적 법 위 반	취 적	개 명	호 적 정 정	기 타	계
처 리															
수 리	전달미제														
	이달수리														
	계														
기 제	허 가														
	불 허														
	기 타														
	계														
미 제															
비 고															
										심 사 필					
										담당자			과장		

보고례기 제2호(기보)				등록세및수입인지수입액표				법원							
(기)				197											
종		별		수입액		누계		비 고							
등 기	등록세	부동산 에 관한	부동산 가격을 과세표준 한 것												
			채권금액을 과세표준 한 것												
		등 기 등록세	기 타												
			선박에 관 한	선박 가격을 과세표준 한 것											
		채권금액을 과세표준 한 것													
		등 기 등록세	기 타												
			상사회사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한 법인에 관한 등기등록세(제8조)												
		기 타 등 기 등 록 세													
		계													
			수수료	대법원규칙 제138호에 의한 것											
민사소송	본 안														
	집 행 및 신 청														
	기 타														
행정소송	본 안														
	신 청														
	기 타														
가 사	본 안														
	신 청														
	기 타														
호적사건	호 적 비 송 사 건														
형 사	형사소송법 제45조에 의한 것														
집 달 리	집달리법 제16조제3항에 의한 것														
차지차가	차지차가조정법 제35조 및 제36조에 의한 것														
기 타												심 사 필			
	수 입 인 지 및 수 수 료 계											담		과	

사 무 의 종 류		수 리			기 제	미 제
		전기미제	본기수리	계		
민사소 송법에 의 한 집행행 위	유 체 동 산					
	채권 기타의 재산권					
	부동산 및 선박					
	물건의 인도 또는 명도					
	가 압 류 가 처 분					
경매법 에의한 경 매	유 체 동 산					
	채권 기타의 재산권					
	부동산 및 선박					
송 달	민 사					
	형 사					
거 절 증 서 작 성						
벌금, 과료의 징수 및 물수물품의 회수 혹은 매각						
집행기록 기타 서류의 열람 및 등본 초본의 교부						
증 명 서 교 부						
가압류, 가처분의 해제						
기 타 사 무						
계						
구 분		수 입 금 액				
		민 사	형 사	계		
집 행	수 수 료	원:	원:	원:		
	여 비	:	:	:		
	숙 박 료	:	:	:		
	서 기 료	:	:	:		
	기 타 의 체 당 금	:	:	:		
	계	:	:	:		
송 달	수 수 료	:	:	:		
	여 비	:	:	:		
	계	:	:	:		
기 타 직 무 상 의 수 입		:	:	:		
합 계		:	:	:		
집 행 에 관 한 비 용 액			원:			
비 고			심 사 필			
			담당자		과장	

1. 위 표는 집달리 또는 집달리 직무 대행자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 "집행에 관한 비용액"란에는 기재사건만을 계기한다.
3. "기타사무"항에 계기한 수리사건은 그 종류 및 건수를 "비고"란에 설명한다.

보고례기 제5호(기보)		법관1인당부담건수표		법원	
197 . . .					
가 동 법관수	사 건		건 수	비 고	
	민 사 가 사 행 정 형 사	본 안			
잡 사 건					
을 병 류					
조 정					
갑 류 기 타 신 청					
행 정 형 사	본 안				
	잡 사 건				
	본 안				

		잡	사	건						
	즉	결								
	영 장	구	속							
		압	수	수	색					
	합 계	본	안							
		즉	결	영	장					
		기	타	사	건					
		계								
	1 월 평 균	본	안							
		즉	결	영	장					
		기	타	사	건					
		계								
		심 사 필								
		담			과					
		당			장					
		자								

주 의

1. "가동법관수"는 기말현재를 표준으로 하고 사건은 신수 건수 또는 인원수로 한다.
2. "형사본안"에는 공판사건외에 약식명령사건과 소년 보호사건을 포함하여 그 인원을 계기한다.
그리고 약식기소 되었다가 직권이나 이의 신청에 의하여 정식재판에 회부되었을 때에도 별건으로 취급하여 그 인원을 계기한다. (1명 1건주의)
3. 구속영장에는 수사를 위한 영장발부외에 직권이나 형집행을 위한 발부 인원수를 계기한다.
4. 합계난의 기타사건은 민사 행정 및 형사사건의 잡사건외에 가사사건의 갑류 기타 신청사건을 합산 계기한다.
5. 지방법원은 본원에서 작성한다.

호고례기 제6호(연보)					호 적 사 건 건 수 표					법원				
197														
종 별 \ 건 수		본적지	본적지외	계		종 별 \ 건 수		본적지	본적지외	계				
출 생	혼 인 중 1					사 망 24								
	혼 인 외 2					실 종 25								
기 아 발 건 3						호 주 상 속 26								
인 지	임 의 4					호 주 상 속 회 부 27								
	재 판 5					친 족 입 적 28								
태 아 인 지 6						분 가	임 의 29							
인 지 태 아 사 산 7							강 제 30							
입 양	보 통 8						법 정 31							
	사 후 9					일 가 창 립 32								
	이 성 10					폐 가 33								
입양무효 또는 취소 11						폐가무후가부흥 34								
파 양	협 의 12					개 명 35								
	재 판 13					국 적 득 상 전	귀 화 36							
파 양 취 소 14							상 실 37							
혼 인	보 통 15						회 복 38							
	처 가 입 적 16					전 적 39								
혼인무효 또는 취소 17						취 적	무 적 자 40							
이 혼	협 의 18						미수복지구 41							
	재 판 19						에 본적을 가졌던 자							
이 혼 취 소 20						호 적 정 정 42								
친 권 또 는 관리권	상 실 21					신 고 추 완 43								
	실권선언취소 22					기 타 44								
후 건 개 시 23						합 계 45								

종 별 \ 건 수	편 제	말 소	계		종 별 \ 건 수	본적지	본적지외	계
호 주 상 속 46					국 술 신 고 56			
호주상속회복 47					각 종 고 지 57			
분 가 48					실 기 통 지 58			
일 가 창 립 49					항 고 59			
폐 가 50					계 60			
폐가무후가부흥 51					종 별	건 수	수 수 료	
취 적 52					열 람 61		원 :	
전 적 53					등 본 62		:	
기 타 54					초 본 63		:	
					재 인 증 64		:	
계 55					증 명 65		:	
					계 66		:	
비 고								
						심 사 필		
						담당자		과장

보고례기 제7호(연보)				차 지 차 가 조 정 사 건 표				법원	
197 . . .									
종		별		신 청		직 권		합 계	
수 리	전 년 미 제								
	본 년 수 리								
	계								
기 제	성 립								
	불 성 립								
	취 하								
	기 타								
	계								
미 제									
비 고									
						심 사 필			
						담당자		과장	